

서  
문  
그  
리  
기

최근 5년간 최빈출된 기출 600제를 완벽 정제



2026  
김종규  
최빈출  
600제  
선행정학

필수전환 이후 달라진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을 완벽 반영한 기출입문서

## 2026 김중규 최빈출 600제 선행정학을 출간하며

### I N T R O D U C T I O N

저희가 이 책을 새로 선보이게 된 것은 “기출에도 회독이 있다”는 컨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학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이론공부를 마치고 연말에 기출문풀에 돌입하지만 기출문항수도 많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나 일회성 문제들이 섞여 있어, 정답을 고르거나 이론과 문제를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인 기출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초시생들이 이론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대표적인 최빈출 문제를 통해 미리 핵심기출을 부담 없이 위밍업하거나 이론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출입문서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출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출시즌 막바지에는 중요한 빈출문제들만 정제·엄선된 이 책이 최종 마무리 기출회독용으로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표성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될 경우에는 이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인사혁신처 기준 최근 5년간 최소 3회 이상 출제된 빈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하여 총 600여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항별로 중요도와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출제횟수(변형된 문제 포함)를 표기하여 수험생 스스로 집중력의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문항별로 출제포인트를 통해 출제의도와 출제추이를 분석, 제시하고 답을 쉽게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접근경로와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기출문제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제마다 저자의 생각과 합격생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중규생팁과 합격생팁을 제시하여 문제를 푸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항마다 자세한 지문별 해설을 달고 지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오답피하기 해설을 빠짐없이 넣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해설에서 특히 중요한 키워드들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여 빠르게 오답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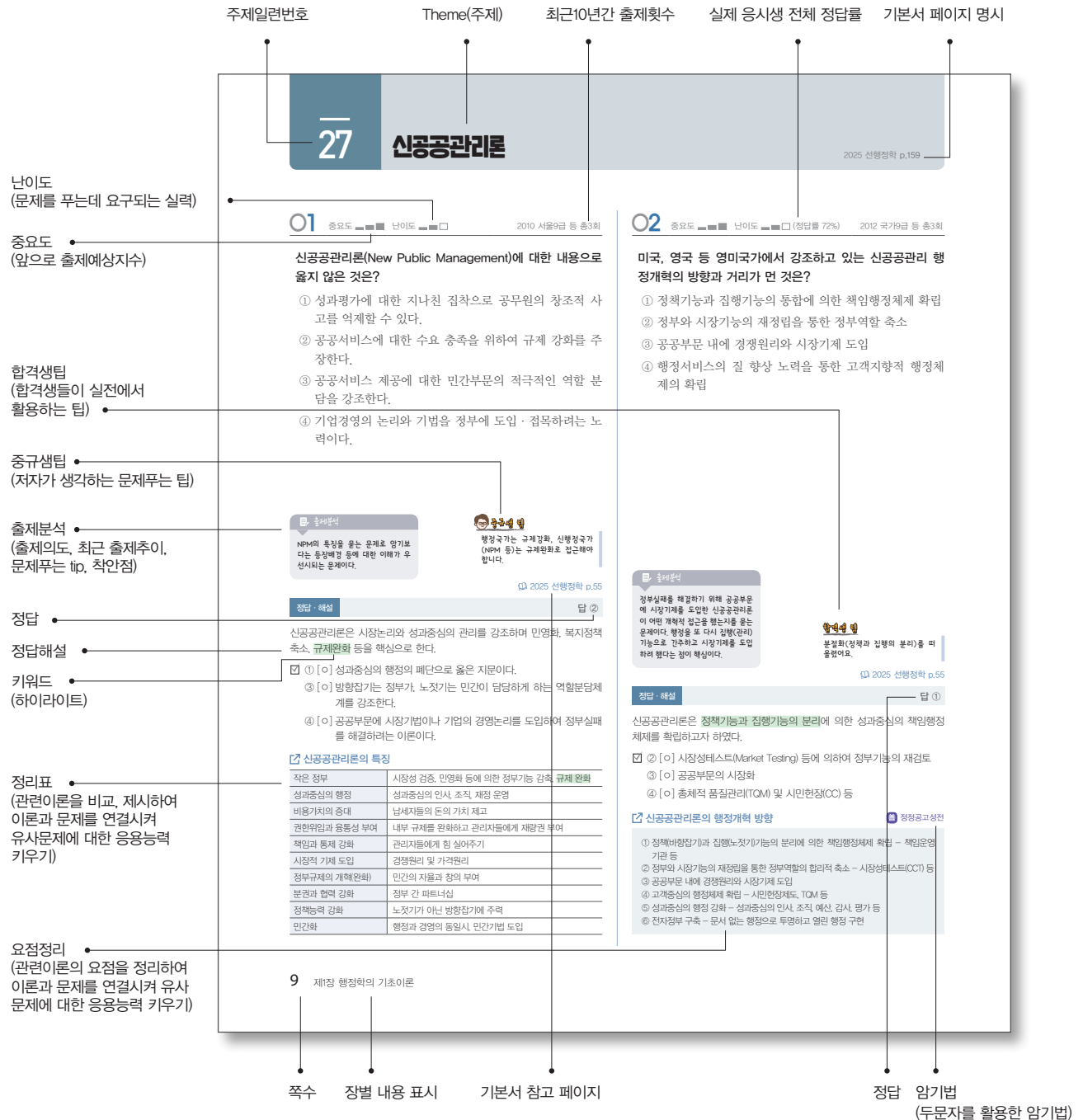
**여섯째**,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요점정리나 정리표로 제시하여 이론과 문제를 연결시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법」, 「공무원노조법」, 「정부조직법」 등 최근 개정법령은 물론, 필수과목 전환 이후 새롭게 나타난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 정책이슈 등까지 모두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기출위밍업이나 최종회독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여러분의 기출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 4. 14. 카스파 연구실에서

김중규



CHAPTER

# 01

## 행정학의 기초이론

---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학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 행정이론과 학자 및 그 특성이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행정행태론 - 마리니(Marini), 정치행정일원론, 민주성 강조
- ② 행정관리론 - 어윅(Urwick), 정치행정이원론, 형평성 강조
- ③ 비교행정론 - 리그스(Riggs), 정치행정일원론, 합법성 강조
- ④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Osborne), 정치행정이원론, 성과 강조

2025 선행정학 p.7

정답 · 해설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오스본(Osborne) 등이 주장하였으며 행정의 탈정치화를 주장한 정치행정사이원론으로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였다.

- ☑ ① [×] 행정행태론 - Simon, 정치행정사이원론. **합리성** 강조, F.Marini는 행태론이 아닌 신행정론을 제창한 학자이다.
- ② [×] 행정관리론 - Wilson & Urwick, 정치행정이원론, **능률성** 강조. Urwick은 Gulick, Wilson 등과 함께 행정관리설 등 고전기 행정학을 이끌었던 학자이다.
- ③ [×] 비교행정론 - Riggs, 정치행정이원론, **합법성**은 19C 법치국가에서 강조

## ☞ 행정개념의 변천

| 학설       |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설     | 발전기능설    | 정책기능설   | 신공공관리     | 거버넌스     |
|----------|-----------|-----------|-----------|----------|---------|-----------|----------|
| 행정<br>본질 | 관리·집행     | 정책결정+집행   | 집행(사실)    | 목표+정책+집행 | 정책형성+집행 | 신관리       | 협치       |
| 학파       | 기술적 행정학   | 기능적 행정학   | 행정 행태설    | 발전 행정론   | 신행정론    | 신공공관리     | 거버넌스     |
| 시기       | 1880년대    | 1930~40   | 1940년대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 정치·행정    | 이원론       | 일원론       | 새 이원론     | 새 일원론    | 새 일원론   | 새 이원론     | 새 일원론    |
| 행정·경영    | 공·사 행정일원론 | 공·사 행정이원론 | 새 일원론     | 새 이원론    | 새 이원론   | 행정의 시장화   | 행정의 정치화  |
| 이념       | 능률성, 절약   | 민주성       | 합리성       | 효과성      | 형평성, 정의 | 생산성 (효율성) | 신뢰성, 대응성 |
| 학자       | W.Wilson  | Appleby   | H.A.Simon | Esman    | D.Eason | Osborne   | Peters   |

##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국립도서관                      ② 고속도로
- ③ 등대                                ④ 올림픽 주경기장

2025 선행정학 p.9

정답 · 해설

답 ③

등대는 국방, 외교, 치안 등과 함께 경합성과 배제성을 띠지 않는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한다. 국립도서관이나 올림픽경기장 등 공공시설, 국립공원은 공유재, 고속도로나 민간공원, 민간도서관 등은 유료재에 속한다(E.Savas).

- ☑ ①④ [×] 국립도서관 및 국립경기장은 공공시설로 **공유재**
- ② [×] 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로 **유료재**

## ☞ 재화의 구분(E.Savas)

|      | 비경합성 (비분할성) | 경합성 (분할성) |
|------|-------------|-----------|
| 비배제성 | 공공재 (집합재)   | 공유재 (공동재) |
| 배제성  | 요금재 (유료재)   | 민간재 (사적재) |

## ☞ 공공성의 유형에 대응한 서비스의 종류(E.Savas)

| 약           | [경 합 성]                                                                                                                                                                                                          |                                                                                                   | 강   |
|-------------|------------------------------------------------------------------------------------------------------------------------------------------------------------------------------------------------------------------|---------------------------------------------------------------------------------------------------|-----|
| 배<br>제<br>성 | ○국방 ○외교 ○공기 <sup>1)</sup><br>○TV방송(전파)<br>○등대<br><br>○치안<br>○소방<br>○축제 관람<br><br>○가두행진<br><br>○도로 <sup>2)</sup><br>○도로주차<br>○초등교육<br>○공원 <sup>3)</sup><br>○상하수도 · 전기 <sup>4)</sup> ○극장 · 도서관<br>○케이블TV ○통신 ○대중교통 | ○해저광물<br>○환경 오염 방지<br>○바닷물고기 ○국립경기장<br>○예방접종 ○국립도서관<br>○지하수<br>○국립공원 ○혼잡한 무료도로<br>○강, 호수 ○호수의 물고기 | 공공재 |
|             | ○도로 <sup>2)</sup><br>○도로주차<br>○초등교육<br>○공원 <sup>3)</sup><br>○상하수도 · 전기 <sup>4)</sup> ○극장 · 도서관<br>○케이블TV ○통신 ○대중교통                                                                                               | ○오물청소<br>○의료<br>○고등교육 ○전문교육<br>○음식점 · 호텔 ○택시이용 ○물건구매                                              | 요금재 |
|             | ○도로 <sup>2)</sup><br>○도로주차<br>○초등교육<br>○공원 <sup>3)</sup><br>○상하수도 · 전기 <sup>4)</sup> ○극장 · 도서관<br>○케이블TV ○통신 ○대중교통                                                                                               | ○오물청소<br>○의료<br>○고등교육 ○전문교육<br>○음식점 · 호텔 ○택시이용 ○물건구매                                              | 민간재 |

1) 공기의 경우 오염이 되면 비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오염된 공기)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지만,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재(고갈적 또는 환경적 공공재)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E.Savas).

2) 요금재인 도로로는 한산한 유료고속도로를 의미하며 혼잡한 무료도로로는 공유재에 속한다.

3) 국립공원은 공유재인 무료입장공원을 말하고, 공원은 요금재인 유료놀이공원을 말한다.

4) 상하수, 전기, 통신,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은 유료재에 해당하고, 국립공원, 국립도서관, 국립경기장 등 공공시설은 공유재에 해당한다.

01

중요도 ■■■ □ 난이도 ■■■ □

2020 서울·지방9급 등 총3회

##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 ④ 신공공관리론

2025 선행정학 p.43

정답·해설

답 ④

정부실패 이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민영화, 감축관리 등을 통하여 행정기능을 감축하고 민간기업의 시장논리를 도입하려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의미한다.

- ☑ ① [×] 정치행정일원론은 경제대공황 이후 행정국가 시기의 우월해진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큰 정부**에 해당한다.
- ② [×]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은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
- ③ [×]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국가는 행정권의 팽창을 초래하였으며 **행정국가(큰 정부)**와 직결된다.

## ☞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논쟁

| 구분      | 큰 정부 (수요경제학)                     | 작은 정부 (공급경제학)               |
|---------|----------------------------------|-----------------------------|
| 의의      | <b>규제, 복지 등</b>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조 | 정부는 시장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
| 시기      | 1930~1970                        | 1980~1990                   |
| 배경      | 경제대공황 등 시장실패                     | 정부실패                        |
| 국가      | 현대행정국가                           | 신행정국가, 신자유주의                |
| 학자 및 학파 | Keynes, 재정학파                     | Hayek, Friedmann 등 통화학파     |
| 정책수단    | 재정정책 (by 조세 및 지출)                | 금융정책 (by 통화량 조절)            |
| 행정부     | Roosevelt 행정부                    | Reagan 행정부                  |
| 원리      | 필립스곡선                            | 스테그플레이션                     |
| 이념      | 수요가 공급을 창출                       | 공급이 수요를 창출                  |
| 이데올로기   | 수정자본주의, 정부(진보)주의                 | 신자유주의, 시장(보수)주의             |

02

중요도 ■■■ □ 난이도 ■■■ □

2011 서울9급 등 총6회

## 진보주의 정부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 자유 선호
- ② 공익목적의 정부 규제 강화 강조
- ③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조
- ④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 ⑤ 소외집단을 위한 정부정책 선호

☞ 총체분석

진보와 보수의 본질을 묻는 문제로 꾸준히 빈출되고 있다.

2025 선행정학 p.45

정답·해설

답 ①

소극적 자유(정부로부터의 자유) 선호는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이다. 진보주의 정부는 **적극적 자유**(정부에로의 자유)를 추구한다.

→ 자유를 열렬히 옹호

##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 구분             | 진보주의(좌파) - 큰 정부론                                                                                                                                 | 보수주의(우파) - 작은 정부론                                                                                                              |
|----------------|--------------------------------------------------------------------------------------------------------------------------------------------------|--------------------------------------------------------------------------------------------------------------------------------|
| 인간관            | ① 욕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 있는 인간<br>② 경제인간 부정                                                                                                             | ① 오류의 가능성 없는 인간<br>②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
| 가치관 (자유·평등·공익) | ① 자유를 열렬히 옹호(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정부에로의 자유)<br>②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개입 허용 → <b>분배의 공정성</b><br>③ 배분적 정의(부의 공정한 분배)<br>④ 공익의 실체설(공동선, 시민의 미덕) | ① 자유를 강조(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br>②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 (소득, 부 또는 결과의 평등은 경시)<br>③ 교환적(평균적) 정의(거래의 공정성)<br>④ 공익의 과정설(개인의 자유) |
| 시장관            | ①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br>②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 인지<br>③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에 의해 치유가능                                                                | ①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br>② 정부불신, 정부는 개인자유를 위해 롭게 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제적 횡포                                                                 |
| 정책관            | ①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br>② 공익목적의 정부규제정책<br>③ 조세증액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br>④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사용 반대<br>⑤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반대                                               | ①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비선호<br>②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지향 정책 선호<br>③ 조세 감면 내지는 완화<br>④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사용 찬성<br>⑤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찬성                      |

01

중요도 ▬□□ 난이도 ▬▬▬ (정답률 29%)

2022 군무원9급

우리나라의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 ③ 시보기간 동안에 직권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025 선행정학 p.502

정답 · 해설

답 ②

시보공무원제도는 신규채용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5급 1년, 6급 이하 6개월) 정규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근무를 하면서 시보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교육훈련 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선발과정의 일부로, 시보기간에도 보직(주요 보직을 제외한 실무보직)을 부여 받아 근무할 수 있다.

- ☑ ① [×] 시보기간 동안 신분보장이 제한적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며, 정식 임용 후에도 **시보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합산**되어 포함된다. 다만 시보기간 동안 휴직 또는 직위해제,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기간 및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 시보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시보기간에도 보직을 부여받아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③ [×] 시보기간 동안 직권면직이 되면, 해당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을 뿐,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징계 중 해임처분을 받았을 때이다.
- ④ [×] 시보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규임용거부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해임 등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02

중요도 ▬□□ 난이도 ▬▬▬

2022 국가7급

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2021년 10월 13일에 성년후견이 종료된 甲
- ② 파산선고를 받고 2021년 10월 13일에 복권된 乙
- ③ 20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丙
- ④ 2017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丁

2025 선행정학 p.502

정답 · 해설

답 ③

임용결격사유를 묻는 문항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따라서 丙의 경우 2024.10.13.까지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① [○] 피성년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후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별도 기간제한 없이 임용이 가능하다.
- ②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복권된 후에는 별도 기간제한 없이 임용이 가능하다.
- ④ [○] 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 집행유예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선고유예는 종료일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임용결격사유별 결격기간

| 사유           | 기간      |
|--------------|---------|
| 피성년후견        | 종료 전    |
| 파산           | 복권 전    |
| 금고 이상 형 집행   | 5년 미경과자 |
|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 2년 미경과자 |
|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 기간종인 자  |
| 해임           | 3년 미경과자 |
| 파면           | 5년 미경과자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2025 선행정학 p.547

정답 · 해설      답 ④

④는 강임이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며** 정부조직개편으로 폐직·과원 상태가 되었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하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이다.

- ☑ ① [○]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② [○] 직권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위를 해제하고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인사처분이다.

주의

**[징계가 아닌 제도들]**  
강등은 강임과 다름. 강임은 직제·정원의 개폐로 폐직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하위 직위로 임명하는 결원 보충의 한 방법으로 **징계가 아님**. 직위해제·직권면직도 징계가 아님.  
[결론]  
강등 : 징계 ○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 징계 x

→ 징계가 아님  
☑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 구분 | 직위해제                                                                                                                                      | 직권면직                                                                                                                                                                                                                                                                 |
|----|-------------------------------------------------------------------------------------------------------------------------------------------|----------------------------------------------------------------------------------------------------------------------------------------------------------------------------------------------------------------------------------------------------------------------|
| 개념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기간(3월 이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처분 ⇨ 신분 유지<br>* 직위해제 사유 소멸 시 지체없이 직위 부여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면직(신분박탈)하는 인사 처분 ⇨ 신분 박탈<br>* 징계위 등의①를 구하거나 의견②~⑥을 들어야 함.                                                                                                                                                                                        |
| 사유 |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불량한 자<br>② 징계의결중인 재(중)징계에 한함<br>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br>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직격심사 요구를 받은 자<br>⑤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일정한 자 | ① 직무능력 부족 및 성과물량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그 향상이 기대될 수 없을 때<br>②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br>③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인한 감원시<br>④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 등<br>⑤ 징병검사·입영 등의 명령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br>⑥ 해당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br>⑦ 고위공무원이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



☞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 자율규제윤리                   | 공무원헌장                                                                                                                                                                                                                                                                                                         | 창의, 다양, 투명, 전문, 공정, 공익, 민주 | ☞ 창다투전공청렴공민 |
|--------------------------|---------------------------------------------------------------------------------------------------------------------------------------------------------------------------------------------------------------------------------------------------------------------------------------------------------------|----------------------------|-------------|
| 헌법                       |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br>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                            |             |
| 국가공무원법                   | ① 성실의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br>② 복종의무: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br>③ 직장이탈금지: 상관의 허가 필요<br>④ 친절·공정 의무<br>⑤ 종교중립의 의무<br>⑥ 비밀엄수의무: 재직 중 + 퇴직 후<br>⑦ 청렴의무: 사례·증여·향응 금지<br>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대통령 허가 필요<br>⑨ 품위유지의무<br>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기관장 허가 필요<br>⑪ 집단행위금지<br>⑫ 정치활동금지<br>⑬ 선서의 의무                                                |                            |             |
| 공직자윤리법                   |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4급 이상 등록, 1급 이상 공개<br>②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미화 100불, 한화 10만원 이상)<br>③ 취업제한의무(재산등록의무자): 퇴직 후 3년 간(퇴직 전 5년)<br>④ 이해충돌방지의무<br>⑤ 주식백지신탁의무: 1급 이상, 3,000만원 이상<br>⑥ 행위제한의무: 업무취급제한 등<br>☞ 이선재주취형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내부고발자 보호제도)<br>②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의무(퇴직 후 5년 간, 퇴직 전 5년)<br>③ 국민감사청구제도: 감사원에 청구(300명 이상 서명)                                                                                                                                                                                                    |                            |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 ①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 금지: 법령 위반 청탁 금지<br>②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 처벌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이하는 허용)<br>③ 위반행위 신고의무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br>②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그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br>③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br>④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됨.<br>⑤ 위반행위의 신고는 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감독기관에도 할 수 있음.<br>⑥ 업무충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 |                            |             |
| 공무원 행동강령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2003년 제정된 대통령령<br>②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동규범 규정<br>③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처분                                                                                                                                                                                                            |                            |             |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 ②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 2025 선행정학 p.563

정답·해설 답 ④

이해충돌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

- ☑ 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1년 뒤인 2022. 5. 19. 시행되었다.
- ② [○]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충돌(이미 발생한 이해충돌), 외견적 충돌(가능성 있는 이해충돌), 잠재적 충돌(미래에 예견되는 충돌)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 이해충돌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한 제도이다.

☞ 이해충돌의 유형

☞ 실외장-과가미

|          |                                                                            |
|----------|----------------------------------------------------------------------------|
| 실질적 이해충돌 |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 이해충돌                                                  |
| 외견상 이해충돌 | 공무원의 사익이 부적절하게 공적 의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 영향이 현재화한 것은 아닌 상태의 이해충돌 |
| 잠재적 이해충돌 | 공무원이 미래에 공적 책임에 관련되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

03 중요도 ■■■ 난이도 ■■■

2023 해경간부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뿐만 아니라 성인지기금결산서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무역보험기금은 비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된다.
- ③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④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는 여유재원을 전·출입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5 선행정학 p.610

정답 · 해설 답 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세입세출예결산 뿐 아니라 기금에도 적용되고 있다(2010년이후). 따라서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뿐만 아니라 성인지기금결산서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무역보험기금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된다.
- ③ [×] 과거에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1991~2007), 2007년에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었다.
- ④ [×]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도 전출입이 허용된다.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에서 제외되는 기금(「국가재정법 시행령」)

| 금융성 기금                                                                                                                           | 기타 기금     |
|----------------------------------------------------------------------------------------------------------------------------------|-----------|
| 1. 기술보증기금<br>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br>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br>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br>5. 무역보험기금<br>6. 신용보증기금<br>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br>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1. 외환평형기금 |

04 중요도 ■■■ 난이도 ■■■ (정답률 52%)

2025 국가9급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 ④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025 선행정학 p.609

정답 · 해설 답 ②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은 투자나 사업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수행이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정정책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사업성 기금이다.

- ☑ ① [○]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증액을 할 경우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3년마다 전체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0조).
- ④ [○]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유형

| 유형  | 특징                 | 예                 |
|-----|--------------------|-------------------|
| 사업성 | 특정목적의 사업(투자, 수익 등) |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
| 금융성 | 재정·금융정책 보조(보증 등)   |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
| 보장성 | 적립·종식 목적(연금 등)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
| 계정성 | 자금공급(융자 등)         | 우체국예금보험기금 등       |

기금의 실태조사와 존치여부 평가

매일-3존

|         | 대상        | 주기  |
|---------|-----------|-----|
| 실태조사    | 1/3 이상 기금 | 매년  |
| 존치여부 평가 | 전체기금      | 매3년 |

# 지방자치법개정내용 정리

[2022.1.13. 시행]

| 내용                    |           | 종전                                                                                   | 개정                                                                                   |
|-----------------------|-----------|--------------------------------------------------------------------------------------|--------------------------------------------------------------------------------------|
|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           | ① 지방자치법 :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둔<br>② 세종시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음                | ① 지방자치법 :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br>② 세종시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음         |
|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화        |           | 일률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 (기관대립형)                                                      |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단체장 선임방법 등 포함)을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           | 사무처리의 기본원칙만 규정되어있을 뿐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규정이 없었음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규정<br>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br>② 보충성의 원칙 : 기초단체 우선<br>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 자기 책임하에 종합처리 |
|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규정 개정      |           |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삭제됨                                                             |
|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           | 법적 근거만 남기고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br>↳ 주민조례발안법(2022.1.13.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도입       |           | 규칙 제·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제도 없었음                                                             |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 감사청구연령    | 19세 이상 주민                                                                            |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
|                       | 연대서명인원 축소 | 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br>① 시·도 : 500명<br>② 인구 50만 이상 시 : 300명<br>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200명 | 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br>① 시·도 : 300명<br>② 인구 50만 이상 시 : 200명<br>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150명 |
|                       | 감사청구시효 연장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3년                                                                     |
|                       | 공표와 열람    | 규정 없었음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내용을 청구받은 받은날부터 5일 이내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
|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           | 규정 없었음                                                                               |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
| 지방위원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신설     |           | 규정 없었음                                                                               |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지방위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명확화      |           | 규정 없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사무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으로 겸직금지 대상기관 명확화                          |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           | 단체장이 사무직원 인사권 등 행사                                                                   |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
| 폐지분합시 최초 임시회의 소집권자 규정 |           | 규정 없었음                                                                               | 자치단체 폐지분합시 최초임시회의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                   |
|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          |           | 규정 없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둬                                 |



##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http://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http://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5년 4월 21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70-4

값 28,000원

